

제233회 여수시의회 정례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외국인주민 통합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년 12 월 6 일

여 수 시 장

김기영



여수시 조례 제1998호

붙임 여수시 ~~여수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외국인주민 통합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1부

여수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외국인주민 통합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여수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외국인주민 통합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결혼이민자등”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제12조제7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제8호부터 제11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결혼이민자등 가족구성원의 고향방문 지원 사업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 2 조 (정 의)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결혼이민자등”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생략)	5 (현행 제4호와 같음)
제3조(시장의 책무) ① ~ ③ (생략)	제3조(시장의 책무) ① ~ ③ (현행과 같음)
③ (생략)	4 (현행 제3항과 같음)
제12조(통합센터의 추진사업) 통합센터는 「건강가정기본법」, 「다문화가족지원법」, 「제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12조(통합센터의 추진사업) ----- ----- ----- -----.
1. ~ 6. (생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결혼이민자등 가족구성원의 고향방문 지원 사업
7. ~ 10. (생략)	8. ~ 11. (현행 제7호부터 제10호까지와 같음)